- 사회단체 등 보조금집행실태 -

특 정 감 사 실 시 결 과

감 사 실

Ⅰ. 감사배경

- 최근 **마을기업 보조금에 대한 공금횡령, 뇌물수수 관련하여** 공무원 구속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우리구 **행정 집행에 대한 구민 불신 우려됨에 따라,**
- 금번 각종 보조금 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하여 **부적정 집행 및 점검 소홀 사례 발생 등 여부를 확인하고,** 지적사항이 발생된 보조금 집행 부서(기관) 및 보조기관(시설 등)에 대하여 **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서,** 향후 **동일 또는 유사사례 발생 근절** 도모

Ⅱ.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5. 7. 13 ~ 7. 24【10일간】
- 감사범위 : 2013. 1. 1 ~ 2015. 6. 30일까지 집행한 보조사업 전반
- 감사대상 : 보조금 집행 전 부서(기관) 및 보조기관(시설 등)
- 감 사 반 : 감사담당 외 3명
- 감사방법 : 서면 및 필요시 기관(시설) 방문 등
- 중점감사 사항
 - 보조금 선정 적정성 여부
 - 보조금 자금운영 및 집행실태

- 보조사업 조건 준수 여부
- 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보조기관(단체)에 대한 점검 실시 등 관리 실태 전반

Ⅱ. 감사실시 결과

1. 총 괄

가. 행정상 조치 : 총11건(시정1건, 주의10건)

나. 재정상 조치 : 회수 1건 / 65,200원

다. 신분상 조치 : 훈계 2명

2. 주요지적사항

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정산검사 미이행

-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(교부 결정 통지)에 의하면 '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0조(교부조건)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.'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동 조례 제26조(정산검사)에 의하면'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,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(실적보고)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.'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,

➡ 2개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**보조금 교부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을 교부**하고, 5개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종료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(실적보고서)를 토대로 보조 목적대로의 사용여부, 법령 및 집행절차 준수, 관련 증빙의 첨부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**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음.** (주의)

② 공용차량의 사적이용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

● 인천광역시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의2(사적용도 사용금지)에 의하면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실무에 의거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성으로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이 불가함에도,

➡ ○○○○센터에서는 대표의 **모친상 빈소 방문시 공용차량을 이용**하면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주유비 50,000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15,200원을 자활센터운영비에서 사용·집행(회수)

③ ○○○○상담소 운영비 집행 부적정

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실무 업무추진비(기관운영비) 집행지침에 의하면 축의·부의금으로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무용품비, 인쇄비, 집기구입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말하나,

➡ △△△상담소에서는 상담직원의 결혼 축의금 지출하면서 **1건 100,000원을 지출**하였으며, □□상담소에서는 결재 시 사용할 **개인도장을 상담소 운영예산으로 30,000원을 지출**함.(주의)

④ 보조금 집행 부적정

-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, ○○사업 교부조건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처리 하여야 하나

➡ ○○과에서는 2014년도 △△사업을 집행하면서, 보조금의 집행시에는 관련 조례, 보조조건 등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, **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정산보고서가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작성·집행됨**(주의, 훈계2명)